

구산동 주민자치회 1월 정기회의 회의록

회의명	구산동 주민자치회 1월 정기회의				
회의일시	2024. 1. 23. (화) 18:30 ~ 19:30				
장 소	구산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참석자 (총39명)	고 문 : 기노만, 박세은		회의진행	이상훈 회장, 이경진 사무국장	
	참석 40명 / 불참 10명		참관 및 협조	박재균 동장, 박주연 주임 최윤실 간사	
회의구분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기타 ()
	○				
회의안건 결정사항	안건 1. 분과 구성 개선사항 논의 건 - 원안가결 □ 현 황 -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내 1개의 분과에서 활동을 하며 분과별 사업을 실행 중임 - 분과별 사업 실행에 따른 타 사업 배제 및 분과 동아리화 현상 발생 - 매년 동일한 위원의 유사한 사업 제안에 따른 의제의 다양성 상실 - 주민자치위원 2기 3명이 사임함에 따라 미래시민교육분과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에 충족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주민자치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 - 다양한 분과영역의 동 지역사업을 실행 추진 - 분과 동아리화 방지 및 타 분과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 참신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 및 실행에 기여 ※ 위 논의 사항은 구 주민참여협치과 참여구정팀과 자치사업팀의 권고사항으로 1기 분과 구성시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하여 실행한 결과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도가 더욱 힘들며 1개 분과 사업에 집중하고자 현재 1개 분과에만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운영세칙 제2장 제18조(분과위원회) 5항 분과위원회의 분과이동은 연 1회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과영역의 동 지역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분과 이동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요청하여 분과를 이동 할 수 있다.				

	안건 2. 주민자치회 회비 정산의 건 - 원안가결 □ 1안 : 2023년도 주민자치회 회비 1월 4일 기준으로 2,652,170원으로 2,000,000원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부함. (잔액 652,170원)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칙 안 부칙 제4조 6항 :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운영진회의를 통해 임기가 같고 일부 잔액을 남겨두는 것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함. □ 2안 : 분과회의 식비(1인 8,000원) 초과분에 대해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칙 안 부칙 제4조 2항4호 : 정기회의 식비(1인 8,000원) 초과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초과분은 50%(1인 4,000원)로 제한한다. 와 같이 분과회의 식비도 초과분에 대해 1인 4,000원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집행 예산 중 의제발굴 분과 다과비 4천원*10회로 측정 되어있으며 식사시 두달에 한번으로 총 5번의 식사 가능)
회의내용	▶000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장 이상훈입니다. 참석자 4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산동 주민자치회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0회장 -첫번째 “분과 구성 개선사항 논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임기 내 1개의 분과에서 활동을 하며 분과별 사업을 실행 하고 있으며 분과별 사업 실행에 따른 타 사업 배제 및 분과 동아리화 현상 발생 매년 동일한 위원의 유사한 사업 제안에 따른 의제의 다양성 상실 주민자치위원 2기 3명이 사임함에 따라 미래시민교육분과에 결원이 발생하여 이에 충족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 다양한 분과영역의 동 지역사업을 실행 추진, 분과 동아리화 방지 및 타 분과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참신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 및 실행에 기여 한다입니다. 위 논의 사항은 구 주민참여협치과 참여구정팀과 자치사업팀의 권고사항입니다. 우리들은 1기 분과 구성시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하여 실행한 결과 2개 이상의 분과에 참여도가 더욱 힘들며 1개 분과 사업에 집중하고자 현재 1개 분과에만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세칙 제2장 제 18조(분과위원회) 5항 분과위원회의 분과이동은 연 1회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라고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과영역의 동 지역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분과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1월 31일까지 사무국에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의 있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2개 이상 분과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까? ▶000회장 -아니요.저희 분과는 기존에 2개이상 분과에 참여하여 사업을 실행하였으나, 2개 분과에 참석하기가 더 힘들어 2기부터 1개 분과에 소속되어 분과 실행을 하고 있으며 1개 분과에만 속하다 보니 동화리화 되는 것을 막고자 구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입니다.

▶000위원

-지금 1개 분과에만 속하다 보니 다른 분과에 계신 위원님 얼굴을 모르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2개 이상 분과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힘이 들었습니다. 1개 분과에서만 활동을 하되 매월 정기회의에 분과별로 사업진행하는것에 대해 분과장님들이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분과 이동이라는 것은 현재 활동하는 분과에서 다른 분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000회장

-네.그렇습니다.동아리화를 막고 올해 실행 될 다른 분과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분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000위원

-없습니다.

▶000회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0회장

-아래 자료에 2024년도 분과별로 실행할 사업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면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1기 2기 하신 위원님들은 1번의 연임이 남아 있어 내년 연임신청 하시면 26년까지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기 위원님들은 2번 연임하여 28년도 까지 할 수 있습니다. 3기 신규 위원모집은 24년 9월부터 12월 까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00회장

-두번째 “주민자치회 회비 정산의 건” 을 상정합니다.

1안으로 2023년도 주민자치회 회비 1월 4일 기분으로 2,652,170원으로 2,000,000원을 1월 15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칙 안 부칙 제4조 6항으로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운영진회의를 통해 임기가 같고 일부 잔액을 남겨두는 것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없습니다.

▶000회장

-2안은 분과회의 식비 초과분에 대해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칙 안 부칙 제4조 2항4호와 같이 분과회의 식비도 초과분에 대해 1인 4,000원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안은 식비 1인 8,000원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식비 초과시 분과장들의 개인사비로 결제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원님들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집행 예산 중 의제발굴 분과 다과비 4천원씩 10회로 측정 되어있으며 식사시 두달에 한번으로 총 5번의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5회로 제한합니다.

이에 이의 있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1인 4,000원으로 측정 하는 것 보다 분과별 금액을 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000위원 -분과별 참석하는 위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거 보다 인당 4천원으로 측정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000위원 -분과 다과비 4천원 10회는 식사는 빠져있는 거 아니니까? ▶000사무국장 -보조금 예산 계획으로 작년대비 예산이 삭감 되어 분과회의시 매월 다과비인 4천원으로 10회 측정해 놓은 것이며 분과별로 매달 4천원씩 다과로 하셔도 되고 두달에 한번 8천원으로 식사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달에 한번씩 식사를 한다고 하시면 10회로 측정했기 때문에 최대 5회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000위원 -네 ▶000회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000위원 -없습니다. ▶000회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논의를 마치고 안내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안내사항 전달=== ▶000사무국장 -이제 회장님의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000회장 -이것으로 구산동 주민자치회 2024년 1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19시 30분)
안내사항	1. ‘은평구민 봉산 해맞이’ 개최 안내 ☐ 일 시 : 2024. 1. 30.(화) 10:00 ☐ 장 소 : 구산동 주민센터 지하 건강증진실 ☐ 대 상 : 구산동 주민 100여명 ☐ 추진방향 : ○ 동 주요 추진계획 공유 및 주민 의견 청취 ○ 주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 마련 ☐ 내 용 : ○ 1부 :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표창수여, 업무보고 ○ 2부 : 주민 소통·공감 마당,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등 ☐ 협조사항 : 당일 행사 참석 요청 ※ 9:30 전까지 입장

2.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비 안내

□ MG새마을금고 9002-2004-1248-4 구산동 주민자치회 (월 10,000)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안내사항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공직선거법

○상시제한

- 선거운동 제한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관여 금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90일 제한('24.1.11(목)~4.10.(수))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 제한

○60일 제한('24.2.10(토)~4.10.(수))

-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제한('24.3.28.(목)~4.10.(수))

- 주민자치회 회의 등 금지 : 각종집회 등의 제한

사진기록

